

의안 번호	258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7.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7. 7.(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7. 14.(화)

2. 제안설명 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가. 제안 이유

- 국가시책 및 지역 내 긴급한 현안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0명” 에서 “726명” 으로 6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95명” 에서 “700명” 으로 5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 에서 “26명” 으로 증원(안 제2조)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2)

1) 별정직 공무원

구분	6급 상당 이상	7급 상당 이하	→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비율	50% 이내	50%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 총 계: 720명 → 726명(증 6명)
- 일반직: 717명 → 723명(증 6명)
 - 가) 6급 이하: 664명 → 670명(증 6명)

다.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국가시책 및 지역 내 긴급한 현안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20명에서 726명으로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을 695명에서 700명으로 5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원하고, ▲안 제3조 별표2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6급 상당 이상 50% 이내와 7급 상당 이하 50% 이상”을 “5급 상당 50% 이내, 6급 상당 이하 50%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위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함.
- 전체적 비용추계는 2026년 공무원 해당직급 급여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매년 봉급 인상분은 3%씩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하여 5년간 총 13억 9,055만원의 구비 소요 추계하였음.
-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를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